

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19년 9월호

1. 법률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전자등록업규정
- 나.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
- 다. 금융투자업규정
- 라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
- 나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
- 다.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
- 라. 스크관리규정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
- 나.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

1. 법률*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19/8/20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요건 및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, 전문투자자 전용의 비상장 지분증권 장외매매거래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및 절차 개선(제10조 제3항 제17호)
 - 자본시장 내 투자위험이 높은 모험자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 전문투자자군의 육성이 필요
 -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 개선
 - (기존)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5억원 이상일 것 → (개정)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5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완화
 - 소득액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, 자산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갖출 것
 -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절차 개선
 - 관련 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개인이 보다 용이하게 전문투자자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
- 전문투자자 전용의 비상장 지분증권 장외매매거래 시장 개설(제178조 제1항, 제307조 제2항 제5호의2)
 -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비상장 지분증권 장외매매거래 시장을 개설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권(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)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
 - 비상장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업기업·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함
 - 매매거래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되, 기존 비상장 주권의 장외매매거래 시장에 적용되는 재무상태·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 현황의 공시 의무를 면제
 -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 외의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포함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전자등록업규정
- 나.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
- 다. 금융투자업규정
- 라.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전자등록업규정 (2019/8/29 제정·2019/9/16 시행)¹⁾

1) 제정 이유

- 「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정(법률 제14096호, 2016.3.22. 공포, 2019.9.16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심사 절차·방법 등(제2-1조부터 제2-3조)
 -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업 폐지 또는 해산의 승인을 받고자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각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규정
 - 전자등록업 폐지 또는 해산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을 규정
 - 승인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한 이해관계인과 또는 경영진과의 면담
 - 조건부 허가시의 이행상황 확인 등
- 계좌관리기관의 범위 확대(제2-4조)
 -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채권 지급·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, 법 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 준하는 외국법인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계좌관리기관의 범위에 추가
 - (계좌관리기관) 전자증권제도의 제도운영기관으로 고객계좌의 개설·관리, 고객계좌보의 작성·관리 및 전자등록기관에의 고객관리계좌 개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, 법 및 시행령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, 은행, 증권금융회사 등을 규정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9년 8월 29일부터 시행

□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 확대(제2-5조)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한국거래소,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, 대주주, 담보제공·의무보유 의 목적을 가진 개인·일반 법인 및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 등을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에 추가
 - 전자등록기관에 직접 개설하는 계좌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자로서 법 및 시행령은 계좌관리기관,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해당 기금을 운용하는 법안을 규정

□ 의무 전자등록 대상 주식등의 범위 확대(제3-1조)

- 신규 발행시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주식등의 범위에 전자등록되었거나 전자등록하려는 주식과 관련된 종류주식,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규정

□ 사전심사 신청 승인 거부사유 규정(제3-2조)

- 종목별로 최초로 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사전심사 과정에서의 거부사유로서 전자등록업규정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업무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를 규정

□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사유 추가(제3-3조 및 제3-4조)

-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사유 규정
 - 상장폐지 등으로 인하여 실기주 매각이 시급한 경우,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
 - 법 제27조에 따라 전자등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물주권 등 제출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권리자의 명의로 개설한 임시 계좌로서 처분을 비롯한 제반 행위가 제한됨
- 일반 전자등록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사유로서 상사유질계약을 실행하기 위한 경우를 규정

□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변경·말소의 전자등록 사유 추가(제3-5조 및 제3-6조)

- 신청에 의한 변경·말소의 전자등록 사유로서 전환권·상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관련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를 규정
- 직권에 의한 변경·말소의 전자등록 사유로서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전환권·상환권이 행사도니 경우 및 신주인수권증서·증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를 규정

□ 신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 사유 추가(제4-1조)

-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해당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와의 명의개서대행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규정

□ 검사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추가(제5-1조)

- 업무의 성격과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계좌관리기관의 범위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채권 지급·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및 법 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 준하는 외국법인을 규정

□ 전자증권제도 운영에 필요한 부수사항 규정(제6-1조 및 제6-2조)

-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려는 외국법인등이 실물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실물증권을 보관하여야 하는 해외 소재 보관기관의 자격 요건 규정
 - 원칙적으로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실물발행이 금지되나, 외국법인등의 경우 자국 증권법제와의 충돌이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실물발행을 허용
- 복수의 전자등록기관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행인, 계좌관리기관, 전자등록기관 등 관련 참가자의 변경에 필요한 방법·절차 규정

□ 전자등록전환에 필요한 세부 방법·절차(부칙 제2조)

- 전자등록의 근거 문서인 정관·계약 등의 발행인 제출 의무 및 전자등록기관의 발행인관리계좌 개설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규정

□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(부칙 제3조)

- 예탁된 비상장주식등의 발행인이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전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그 신규 전자등록일이 제도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필요한 임시 조치를 규정

나.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(2019/8/29 제정·2019/9/16 시행)

1) 제정 이유

- 「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정(법률 제14096호, 2016.3.22. 공포, 2019.9.16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 및 해당 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·방법 등(제3조부터 제7조)

- 전자등록업허가 취득에 필요한 요건 중 사업계획, 인력, 전산설비, 물적설비, 이해상충방지체계, 대주주 요건에 관한 세부 심사 기준을 규정

- 전자등록업허가 또는 예비허가의 신청시 필요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범위 규정
- 전자등록업허가 또는 예비허가의 신청 및 해당 신청 시 허가 승인권자(금융위원회·법무장관)의 승인여부 검토에 관한 각각의 세부 절차·방법 규정

□ 전자등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원의 적립 및 보충 방법·절차(제8조부터 제10조)

- 초과분 발생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이 사전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는 자원(전자등록적립금)의 구체적인 적립 시기·방법, 사용 후의 보충 방법·절차 등을 규정
- 전자등록적립금의 사용으로도 미해소된 초과분이 존재하는 경우 각 계좌 관리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산정 기준 등을 규정

다. 금융투자업규정 (2019/8/29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정(법률 제14096호, 2016.3.22. 공포, 2019.9.16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등록 방식에 의한 증권의 발행, 유통, 권리행사 및 그 밖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예외 사항 추가(제4-6조)
 -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복수의 금융투자업 수행 내부 조직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정보에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주권에 관한 정보를 규정
- 증권담보용자 업무의 대상에 전자등록주식등 추가(제4-21조, 제4-24조, 제4-102조)
 - 투자자가 금전의 용자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담보 대상에 기존의 예탁증권에 더하여 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추가 규정
- 전자등록기관의 장외결제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내용 반영(제4-36조 및 제5-4조)
 -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매매명세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전자등록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 규정
 - 투자매매업자등과의 기관간 채권 장외결제업무 수행기관으로 전자등록기관을, 해당 업무 수행방법으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각각 추가 규정
 - 법 제정 및 이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기관결제 업무 수행자로 추가 지정됨

□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대행기관 변경(제4-66조)

-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대행기관을 예탁결제원에서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하여 규정
 - 법 제정 및 이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현행 예탁결제원에서 전자등록기관으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대행기관이 변경

□ 투자매매업자들의 조건부매도증권 관련 업무 절차·방법상 변동사항(제5-21조 및 제5-22조)

- 전자증권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고객 조건부매도증권의 보관·관리 방법으로서 전자등록계좌부인 고객계좌부상 전자등록 방식을 추가 규정
- 투자매매업자들이 조건부매도증권 보유 고객에게 해당 증권이 변동 내역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전자등록기관에 보관·관리 서비스를 위탁한 경우를 추가

□ 증권대차거래 관련 업무 주체·방법상 변동사항(제5-25조 및 제5-26조)

- 증권대차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대차참가자에 대한 담보징구의무 이행 기관 또한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
- 전자등록된 증권에 적합한 대차거래대상 증권인도 방법으로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식을 추가

□ 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와 관련한 업무수행 기관 및 그 방법절차의 변경사항(제6-4조, 제6-7조, 제6-8조, 제6-10조, 제6-21조 및 제6-24조)

- 외국인의 ETF 취득내역, 증권대차거래 내역의 보고기관 및 외국인 거래 관련 금융감독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대응 기관으로 전자등록기관을 규정
- 외국인의 장외거래 가능 사유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대차거래를 규정하고, 투자등록 면제 사유에 국제예탁결제 기구 명의로 투자등록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를 추가하며, 외국인의 상장증권 보관 방식을 전자등록으로 변경

□ 집합투자증권 관련 업무수행 기관 및 그 방법·절차의 변경사항(제7-29조, 제7-34조 및 제7-41조)

-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ETF)의 설정 방식을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, 집합투자기구의 일부 환매 통지업무 수행기관으로 전자등록기관을 지정
- 전자등록기관의 집합투자재산 보관·관리 보고서 작성·교부 기관이 전자등록 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의무를 부과

□ 1년 이내에도 실기주 과실의 매각이 가능한 사유 변경(제8-2조의2)

- 상장주식은 모두 전자등록 대상이 되므로 비상장주식에만 해당하는 1년 이내 실기주 과실 매각 가능 사유를 규정하고, 그 사유로서 비상장주식을 더 이상 K-OTC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규정

□ 공사채 등록채권의 결제 방식에 대한 경과 조치(부칙 제2조)

-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공사채 등록법에 근거하여 기 발행된 공사채 등록채권의 결제 방식에 대한 경과 조치를 규정

라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2019/8/26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정(법률 제14096호, 2016.3.22. 공포, 2019.9.16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등록 방식에 의한 증권의 발행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전매제한수단에 전자등록을 추가(제2-2조)

- 전매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존 실물증권 또는 예탁증권 외에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된 증권이 추가됨에 따라 그 전매제한수단으로 전자등록 방식을 추가 규정

□ 공사채 등록법 폐지에 따른 사항 반영(제7-2조)

- 공사채 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원화표시채권 및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규정을 삭제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
- 나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
- 다.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
- 라. 리스크관리규정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(2019/8/28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(2019.9.16)에 맞추어 전자증권제도 도입·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대용증권의 거래증거금 예탁·인출 방법(제91조)

- 질권설정·말소 방법이 종전 예탁자계좌부 기재방식에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용증권의 거래증거금 예탁·인출과 관련한 질권설정·말소 방법을 명확히 규정내 반영
- 대용증권이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증권인 경우 거래소가 직접 질권을 취득·말소하는 방법으로 예탁·인출
 -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예탁자계좌부에서 변경
- 계좌관리기관에 개설한 위탁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증권에 대하여 결제회원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거래소가 이에 전질권을 취득·말소하는 방법으로 예탁·인출
 -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기존 투자자계좌부에서 변경

□ 대용증권의 혼합보관 및 반환 근거 삭제(제131조)

- 대용증권의 보관 방법이 기존 예탁자계좌부상 혼합보관에서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별 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

□ 대용증권 예탁·인출 방법 관련 근거법령 변경 반영(제91조, 제129조)

- 대용증권 예탁·인출 방법에 관한 근거법령이 자본시장법에서 전자증권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항에 반영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나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(2019/8/28 개정·2019/9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(2019.9.16)에 맞추어 전자증권제도 도입·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·인출 및 대응증권의 청산증거금 예탁·인출 관련 질권설정 방식 개정(제27조, 제85조)
 - 질권설정 방식이 종전 예탁자계좌부 기재방식에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,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·인출 및 청산증거금 예탁·인출과 관련한 증권의 질권설정·말소 방법을 명확히 규정내 반영
 -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 증권 및 청산증거금 납부 대응증권이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청산회원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증권인 경우에는 거래소가 직접 질권을 취득·말소하는 방법으로 예탁·인출
 - 전자증권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존 예탁자계좌부에서 변경
 - 청산증거금 납부 대응증권이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청산위탁자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증권으로 청산회원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거래소가 이에 전질권을 취득·말소하는 방법으로 예탁·인출
- 대응증권의 혼합보관 및 반환 근거 삭제(제93조)
 - 대응증권의 보관 방법이 기존 예탁자계좌부상 혼합보관에서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별 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
-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 및 대응증권 예탁 관련 근거법령 변경 반영(제27조, 제85조, 제92조)
 -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 및 대응증권 예탁 관련 근거법령이 자본시장법에서 전자증권법으로 변경됨을 관련 조항에 반영

다.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(2019/8/29 개정·2019/9/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코스닥시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·팀 설치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·팀 설치 자율성 제고(12조의5 제4항·제5항)
 - 코스닥시장본부에 부서·팀 설치 시, 코스닥시장본부장의 경영지원본부장 사전협의 절차 폐지
 - 다만, 팀 단위 임시조직의 경우 경영지원본부장 사전협의 절차 유지

라. 리스크관리규정 (2019/8/23 개정·2019/8/2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한국거래소 국가기반시설 보호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임원급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담당관 직제를 신설

2) 주요 내용

- 국가기반체계 보호 담당관 직제 신설(제23조의2)
 - 위기관리업무 담당 본부장보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한국거래소 전산설비에 대한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업무를 담당
 - 기존에는 위기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해당업무 수행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4. 금융투자협회

- 가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
- 나.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

4. 금융투자협회*

가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(2019/8/14 개정·2019/8/15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발행회사에 대한 주관회사의 지분율 산정에 있어 펀드를 통한 간접보유의 경우, 펀드 유형별로 상이한 지분율 산정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함
 - 금융투자협회 인수업무규정에서는 IPO 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발행회사에 대한 주관회사의 지분보유 한도를 규정
 - 주관회사 단독지분율: 5% 한도(초과 보유시 IPO 주관 불가)
 -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 이해관계인 합산 지분율: 10% 한도(초과시 IPO 주관 불가)
 - 지분율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발행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 및 펀드를 통한 간접보유 등 보유방식별로 지분율 산정방식을 명시하고 있었음

[지분율 산정기준]

- ① (경영참여형 사모펀드) 금융투자회사가 펀드에 출자한 비율만큼 펀드에 편입된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
- ② (전문투자형 사모펀드) 금융투자회사의 펀드 출자여부와 관계없이 펀드에 편입된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운용사가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

[문제점]

- ① 증권사가 출자한 펀드의 유형(경영참여형, 전문투자형)에 따라 지분율 산정방식이 상이
- ②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를 설정한 운용사가 계열사인지 여부에 따라 지분율 산정 방식이 상이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2019년 8월 15일 이후 대표주관계약 체결분부터 적용

2) 주요 내용

□ 주식등의 보유주체를 수익자로 명시(제6조 제4항)

- 투자조합 및 사모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은 보유주체가 조합 또는 운용사가 아닌 출자자(수익자)임을 명시
 - 기존 인수업무규정은 출자한 경우에 한하여 제6조 제4항의 지분율 산정방식 적용 → 출자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지분율 산정방식 적용

□ 사모펀드의 지분율 산정기준 통일(제6조 제4항)

-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같이 수익자가 펀드에 출자한 비율만큼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
 - 이를 통해 펀드 출자여부 또는 펀드 설정운용사의 계열사 여부에 따른 지분율 산정방식의 상이 해소
- 다만, 사모펀드 중 개방형 펀드는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자유로워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수시로 변동하는 점을 감안, 폐쇄형 펀드에 한하여 적용

나.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(2019/8/14 개정·2020/1/1 시행)²⁾

1) 개정 이유

-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장지수증권(ETN)에 대한 설명서 예시를 신설하여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함
 - 신탁운용보고서에 수익률 요약서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신탁계약의 운용성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(별첨 1)

-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(예시)에 '상장지수증권(ETN) 투자' 사례를 신설하여, 설명서상 기재사항을 구체화
 - 설명서 내용에는 상장지수증권의 기본정보 외에 운용자산 예상 손익구조 및 제비용, 만기/중도 상환 등에 관한 내용, 위험요인, 기초지수, 위탁자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

□ 신탁운용보고서(별첨 4)

- 특정금전신탁(지정형 특금 제외) 가입자가 실질수익률 및 투자비용 등의 중요정보를 표준화된 내용 및 양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

2)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, 신탁운용보고서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

- 투자원금, 중간인출대금, 수수료·보수, 평가금액, 누적수익률, 연환산수익률, 해지예상금액 등을 기재한 수익률 요약서를 추가
- 투자일임보고서 서식에 수익률 요약서를 추가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 서식1 제22호 개정 (2019.7.10.)의 후속조치 일환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